



- 대구광역시달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-

# 제 안 설 명 서

2021. 2.



서 민 우 의원

- 대구광역시달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-

## 제 안 설 명 서

제안자: 서민우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### 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이 조례는 달서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구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홍보방안을 확보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###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홍보대사의 임무,
-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홍보대사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.
- 안 제5조에서는 홍보대사 운영,
- 안 제6조에서는 홍보대사의 예우 및 보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저작권 귀속과 품위유지 등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.

###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

2월 17일부터 3월 2일까지 13일간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 예고 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.

집행부에서 위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분야 전문가 위촉과 운영에 관한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는데, 본 의원이 사전에 제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.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.

###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갈수록 홍보가 중요해지고 있는 현 시대에 우리구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마련한 본 조례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# 대구광역시달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

[서민우 의원 대표발의]

|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00821010 |
|----------|----------|

발의일자: 2021. 2. 17.

발 의 자: 서민우, 이영빈, 조복희,  
이신자, 배지훈, 정창근,  
김귀화

## 1. 제정이유

이 조례는 달서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구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대구 광역시 달서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홍보방안을 확보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임무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위촉 및 해촉(안 제3조~제4조)
- 다. 운영(안 제5조)
- 라. 예우 및 보상(안 제6조)
- 마. 저작권 귀속 등(안 제7조)
- 바. 품위유지 등(안 제8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제정조례안: 불임 참조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비용추계서: 비대상

## 대구광역시 달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구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임무) 대구광역시 달서구 홍보대사(이하 “홍보대사”라 한다)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구광역시 달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·외 활동
2. 구정 홍보 및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
3. 각종 지역축제 및 문화·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
4.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

제3조(위촉)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1. 구의 위상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
  2. 구의 경제적·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·외 인사
  3.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
-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해촉)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 스스로 그만두기를 원하는 경우
2.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
3.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

제5조(운영) 홍보대사의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, 홍보대사 활동은 사업부서에서 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.

제6조(예우 및 보상)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,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 참여 등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.

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각 호에 따라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저작권 귀속 등)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구에 귀속된다.

제8조(품위유지 등)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구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, 구의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.

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하거나,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,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